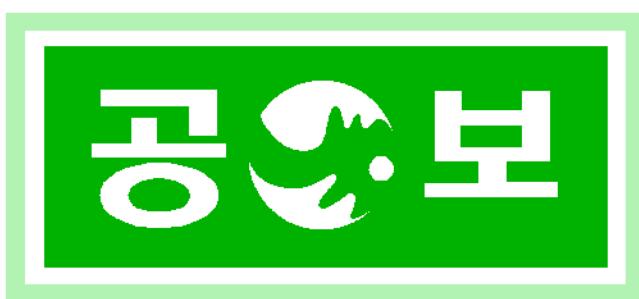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관 의 장
--------	------------------



제 680 호 2011. 2. 7(월)

## 훈령

○ 울산광역시 북구훈령 제167호[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] ..... 2

## 공고

○ 울산광역시 북구공고 제2011-102호[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] ..... 6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문화홍보과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을  
이에 발령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

2011년 2월 7일

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67호

##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(퇴직자와 처벌 규정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정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**제3조(고발대상)**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의 고발대상은 「형법」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공직자윤리법」,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일부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.

**제4조(고발주체)** ① 각 부서책임자와 간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 또는 감사업무 부서의 장(이하 “감사관”이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 또는 감사관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

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고발여부의 판단)** ○ 구청장은 범죄행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,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치리하여야 한다.

1. 직무의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
2. 공무원 등 직무에 관련 부당한 이득 또는 세금과 부당한 벌칙에 해당되는 경우. 다만, 다른 사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.
  - 가. 횡령금액이 200만원(누계금액) 이상인 경우
  - 나.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
  - 다.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세를 끊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
3.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 경우
4. 범죄나용이 과급 개연성이 있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나고 판단되는 경우
5.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
6. 그 밖에 범죄의 횟수,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6조(고발시기 및 절차)**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흥행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분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.

② 고발장은 구청장의 명의로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, 범죄행위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.

**제7조(고발처리상황 권리)** 감사원은 고발한 범죄행위 사실의 으지 및 처리 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행위 사실의 으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고발대상사건 목인에 대한 책임) 구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경不当한 시유 없이 이를 목인한 공무원에 대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정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◆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**1. 제정이유**

국부총리 훈령인 「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시침」(1994년 제정)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사법기관에의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명확한 고발기준을 마련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을 한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고발 조치(제5조)
- 나. 공금횡령 범죄에 대한 고발 시기를 명확히 규정(제6조)
- 다. 고발사건을 확인한 고발책임자에 대한 책임상 강화(제8조)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-102호

##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

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2월 7일

**울산광역시북구청장**

### 1. 위탁운영 대상시설 및 업무

시설	위치	정원	위탁업무
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	울산광역시 북구 우치골1길 10-3 (양정동 484-51, 우 양정동주민센터 2층)	29명	지역아동센터 운영

### 2. 위탁운영기간 : 개소일부터 3년

### 3.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

- 가. 울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- 나. 의병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거나, 이와 관련된 사실이 있는 벤위 제외

### 4. 신청서류 접수

가. 공고기간 : 2011. 2. 7(월) ~ 2. 28(월)(22일간)

나. 접수기간 : 2011. 2. 22(화) ~ 2. 28(월)(7일간)

\* 마감은 사회복지과 사무실 내 18시한 방문자에 한함

다. 설명회 개최

○ 개최시기 : 2011. 2. 10(목) 14:00, 운산광역시 북구 우치골1길 10-3

(양정동 484-51, 우 양정동주민센터 2층)

\* 설명회 불참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혜닝 법인이 질

라. 접수장소 : 울산광역시북구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(울산광역시북구청 4층)

마. 접수방법 : 대표자(위임받은 자) 또는 소설장 대경자 방문 제출

\* 접수시간은 공무원부수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하며 우편 접수 불가

## 5. 신청서류

- 가. 울산광역시복구경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위탁 운영 신경서
  - 나. 범인 설립 협약증 사본 및 정관, 등기부 등본
  - 다.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
  - 라. 범인 자산과세 인증서류 또는 최근 범인 재무제표
    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동수(정기 예금성 예금단 임정)
    - 금고와 진한 혼자 차액증명
  - 마. 운영체의 복지 및 아동권련 사업운영 실적 및 전문성 입증자료
  - 바. 시설장(내정자)의 복지 및 아동권련 사업운영 실적 및 전문성 입증자료
  - 카. 지역아동센터 운영 계획서 및 2011년 예산서
- \* 신청서류는 지역아동센터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양면 제작(좌우)하여 12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 11부)

## 6. 위탁자 선정기준(배점)

- 운영체의 공신력(10), 운영체 및 시설상 사업수행 능력(30), 지역아동센터 운영 계획(35), 운영체의 재정능력(15),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능력(10)

## 7.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

- 가. 결정방법 : 울산광역시복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심의후 구청장 수탁자 결정
- 나. 통지 : 위탁운영사로 선정한 사유 한하여 개별통지

## 8. 유의사항

- 가. 신청자는 심의 담당(주무동보) 울산광역시복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수탁사정 신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시설아동센터 운영 계획 등이 대한 소견을 발표 (10분/프리젠테이션 가능) 하여야 하며 전의(10분)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.  
 ※ 불참시는 신청 의사가 있는 자(포기자)로 간주함.  
 ※ 발표자는 대표자, 수탁운영 시설장 대정지(신청서 기재된 시설장), 대표자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
- 나.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일련·공유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증빙사료 부록으로 위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다.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이 취소됨.
- 라. 관련 시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.
- 마.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.
- 바. 제출서류 중 뒤본지참 서류의 위보을 신청시 지참하지 않있을 경우 사본

서약을 인정하지 않음.

- 사. 위탁운영자로 선정된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흐리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함.
- 아. 시중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진정은 무효로 하되, 불가피한 사유(사고·증명 등으로 장기간 요청을 요하는 경우)는 제외

**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[문의전화 : 사회복지과(여성아동팀) 052-219-7343,7353 FAX 052-219-7359]

## 【신청서식】

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위탁 운영 신청서				처리 기간 별도 심의						
신청인	① 범호 등 ② 대표자 성명 ③ 주 소	④ 설립일 ⑤ 주민등록번호 ⑥ 전화번호								
보육 시설 의장 시장 개인	성 명 스호 ⑦ 주민등록번호 ⑧ 명 칭 ⑨ 소 치 지	(전화: )								
<p>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5항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북구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.</p>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
신청인 (인)										
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비서류</td> <td>수수료</td> </tr> <tr> <td>1. 법인 실무 허가증 사본 및 정관, 등기부 등본 2.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3. 법인 자산관련 임종서류 또는 최근 법인 재무제표 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동산(경기세금 체납 및 납부 여부) -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. 운영처의 복지 및 아동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신규성 임종자료 5. 시설장(내점자)의 복지 및 아동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신규성 임종자료 6.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획서 및 2011년 예산서</td> <td>없음</td> </tr> </table>					구비서류	수수료	1. 법인 실무 허가증 사본 및 정관, 등기부 등본 2.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3. 법인 자산관련 임종서류 또는 최근 법인 재무제표 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동산(경기세금 체납 및 납부 여부) -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		4. 운영처의 복지 및 아동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신규성 임종자료 5. 시설장(내점자)의 복지 및 아동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신규성 임종자료 6.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획서 및 2011년 예산서	없음
구비서류	수수료									
1. 법인 실무 허가증 사본 및 정관, 등기부 등본 2.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3. 법인 자산관련 임종서류 또는 최근 법인 재무제표 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동산(경기세금 체납 및 납부 여부) -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										
4. 운영처의 복지 및 아동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신규성 임종자료 5. 시설장(내점자)의 복지 및 아동관련 사업운영 실적 및 신규성 임종자료 6.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획서 및 2011년 예산서	없음									

210mm×297mm